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(안)

의안 번호	169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5년 7월11일

제안자 : 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의회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회의규칙 중 규정 등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원의 발표기회 보장을 위한 5분 자유발언과 규정질문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문일답방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의원이 구정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 규정을 신설하고
- 나. 규정질문시 일문일답방식이 가능하도록 규정질문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37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다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 2(5분 자유발언)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5분이내의 발언(이하“5분 자유발언”이라 한다)을 허가 할 수 있다.

②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30분전까지 그 발언의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의장은 본회의 개의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를 정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되, 발언내용에 의한 의결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을 요하지 않는다.

④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의중에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제65조 중 제3항내지 4항을 삭제한다.

제6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5조의2(구정질문)①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.

②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이를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질문자수와 질문 순서를 정하여 본회의 개의전까지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질문과 답변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일괄질문·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, 이때 의원 1인의 질문시간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질문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관국장 등 답변할 것을 요구받은 공무원이 답변 하여야 하며 구청장 등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대리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2조(발언시간의 제한)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제32조(발언시간의 제한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2조의2(5분 자유발언)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5분이내의 발언(이하'5분 자유발언'이라 한다)을 허가 할 수 있다.</p> <p>②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30분전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③의장은 본회의 개의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를 정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가 하되, 발언내용에 의한 의결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을 요하지 않는다.</p> <p>④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의중에 발언하게 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5조(구청장 등의 출석요구) ① - ② (생략)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,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, 답변하게 할 수 있다.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이를 놓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65조(구청장 등의 출석요구) ① - ② (현행과 같음) (삭제) (삭제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	<p>제65조의2(구정질문)①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. ②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이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질문자수와 질문 순서를 정하여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③질문과 답변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일괄 질문·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, 이때 의원 1인의 질문시간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④질문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관국장 등 답변할 것을 요구받은 공무원이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 등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</p>